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7. 1. 31.>

지적측량 의뢰서

(앞쪽)

상담번호	상담일	측량 예정일	처리기간 아래참조

의뢰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전화번호	소유자와의 관계
	전자우편	
	주소	

토지소재		지번	지목	원면적 (㎡)	분할후 예정 면적	축척	측량 종목	필지 수	단가	수수료	용도지역
구·읍·면	동·리										
계											

측량목적 또는 요망사항

신청 방법	영수증 발급 구분	측량성과도 받는 방법	신청대행
[ ]방문 [ ]전화 [ ]팩스 [ ]인터넷 [ ]우편 [ ]기타	[ ]현금영수증 [ ]세금계산서	[ ]본인수령 [ ]우송 [ ]전자우편 [ ]기타	[ ]공부정리신청 [ ]등본신청 대장 통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(서명 또는 인)

상담자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

처리기간

1. 일반업무
   ○ 측량 5일, 검사 4일(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,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 가산)
2. 계약업무
   ○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기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

의 뢰 인	처 리 기 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
의뢰서 작성 →	접 수
	↓
	확 인
	↓
	측 량
	↓
← 발 급 통 보	측량성과 검사